

『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 반송에 따른』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. 6. 12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- 1. 공시공달 대상 업체 및 현황 : [붙임1] 참조
- 2. 공고기간 : 2024. 6. 12. ~ 6. 28.
- 3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- 4. 공고내용

상호 및 대표자	(주)도원산업(장*)
소재지	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 2**-1 (가좌동) 나동10*호
업종 (등록번호)	금속·창호·지붕·건축물조립공사업[인천남동19-07-01]
위반내용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[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]
처분종류	영업정지 6개월
처분근거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제3호,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
청문실시	일시: 2024년 7 월 8일 월요일 14:00 장소: 인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
문의처	서구청 도로과 건설행정팀(☎ 560-4484)

<청문시 유의사항>

- 1.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2.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- 3.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